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2. 23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2. 2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2. 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하수과장 윤범수)

가. 제안이유

○ 환경부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되어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, 생산단가를 현실화하여 빈약한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사업의 재정력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공공하수도의 사용요금 및 업종을 변경함(별표1, 2)
  - 사용요금을 평균 35% 인상(85.41원/톤 → 115.30원/톤, 톤당인상액 29.89원)
  - 현행 9개 사용료부과 업종을 6개 업종으로 조정함
  -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누진체계를 세분화함
- 하수도법 개정(99. 2. 8)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절차를 새로이 정함(안 제5조의2)
-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하수배출량을 조정토록 하고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폐수량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도 사용료를 35% 인상하는 근거는?</li> <li>○ 35% 인상시 사용료는 얼마 정도 더 들어 오는가?</li> <li>○ 하수도공기업의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지요?</li> <li>○ 35% 인상시 25억원이 늘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지원받으면 99년의 일반회계 지원금 37억원보다 8억원이 금년에 더 는데 어떠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인가?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난해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시 총자산과 비용을 결산해 본 결과 70억원 정도 적자로 약 275% 인상하여야 하나 매년 30~35% 선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여 금년에 35%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</li> <li>○ 약 25억원 정도임</li> <li>○ 일반회계에서 99년도에 37억원 지원받았으며, 2000년도도 20억원 정도 지원받을 예정임</li> <li>○ 우리 시의 하수도가 680km로 법적으로 매년 9%는 개보수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도 약 68km에 대하여 개보수사업과 신설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임</li> </ul>	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“붙임 참조”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[별표1]

## 하수도사용요금표

구 분 업 종		사 용 요 율		비 고
		사 용 구 분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(원)	
가 정 용		0~10	60	
		11~20	70	
		21~30	80	
		31~40	115	
		41~50	120	
		51 이상	250	
업 무 용		1~20	75	
		21~50	105	
		51~100	350	
		101~300	355	
		301 이상	360	
영 업 용		1~30	95	
		31~50	145	
		51~100	270	
		101~500	450	
		501 이상	480	
목탕용	1종	1~500	100	
		501~700	105	
		701~1000	110	
		1001 이상	115	
	2종	1~200	220	
		201~300	285	
		301~500	495	
		501 이상	550	
산 업 용		m <sup>3</sup>	115	

주) 1.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

[별표2]

##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

업종	구분내용
가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</li> <li>•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</li> <li>•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</li> <li>•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</li> </ul>
업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소화전</li> <li>• 시립위탁시설(청소년회관, 체육시설에 한함)</li> <li>• 사회구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하는 시설</li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)</li> <li>• 학교</li> <li>• 정당</li> <li>• 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교회, 사찰,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</li> <li>• 병영</li> <li>• 신문사, 방송국</li> <li>•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</li> <li>• 급수탑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, 공공소화전</li> <li>•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</li> <li>•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</li> </ul>

업 종	구 분 내 용
영 업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집객업, 공연장, 숙박업</li> <li>• 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</li> <li>•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구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포함)</li> <li>• 차량판매·정비업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,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</li> <li>• 예식장</li> <li>• 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</li> <li>• 사진현상소</li> <li>•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</li> <li>•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</li> <li>• 발전소</li> <li>• 이발소(미장원 포함)</li> <li>• 병원</li> <li>•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</li> <li>• 화훼, 식목업</li> <li>•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), 오피스텔</li> <li>• 도살장, 정육업</li> <li>• 양조업, 제빵업, 제분업(방앗간 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 제조업, 의약품, 화장품, 화장품제조업,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, 합성수지제조업, 페인트류제조업, 가구류제조업(자재가공포함), 연료제조(고압가스제조 포함)</li> <li>•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가공업, 식료품제조가공업, 피혁제조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</li> <li>•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</li> <li>• 재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</li> <li>•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 초자제품 포함)</li> </ul>

업 종	구 분 내 용	
영 업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,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칠거민 임시이주단지 에 대한 급수 제외</li> <li>•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•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요율 적용)</li> <li>•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</li> </ul>	
목 탕 용	1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탕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/ul>
	2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•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 수</li> <li>• 가족탕업, 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•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
산 업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li> <li>• 두채 제배업소</li> </ul>	

- 주) 1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2.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
3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##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299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9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시기를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경우 조례 공포일자 등을 감안하면 3월 사용료 중 인상액을 4월 고지분에 소급 적용할 소지가 있고,
- 또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를 고려하여 인상함이 타당하므로 인상시기를 상수도요금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-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를 2000년 3월에서 2000년 7월로 연기하고자 부칙을 일부 개정

##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"2000년 3월"을 "2000년 7월"로 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	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③(요금의 적용시기)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(별표1), (별표2)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	③(요금의 적용시기)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(별표1), (별표2)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##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99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

□ 개정이유

-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되어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, 생산단가를 현실화하여 빈약한 하수도공기업 및 하수도사업의 재정력을 확보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공공하수도의 사용요율 및 업종을 변경함(별표1, 2)
  - 사용요금을 평균 35% 인상(평균 85.41원/톤 → 115.30원/톤, 톤당인상액 29.89원)
  - 현행 9개 사용료부과 업종을 6개 업종으로 조정함
  -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누진체계를 세분화함
- 하수도법 개정(99. 2. 8)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절차를 새로이 정함(안 제5조의2)
-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하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하수배출량을 조정토록 하고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3항)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배수설비 준공공사)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·중·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오수배출량이 다를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기를 설치하고 동일사업장의 모든 오·폐수 등이 동기기를 통하여 배출될 경우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

별표1과 별표2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③(요금의 적용시기)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(별표1), (별표2)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

하수도사용요금표

구 분 업 종		사 용 요 율		비 고
		사 용 구 분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(원)	
가 정 용		0~10	60	
		11~20	70	
		21~30	80	
		31~40	115	
		41~50	120	
		51 이상	250	
업 무 용		1~20	75	
		21~50	105	
		51~100	350	
		101~300	355	
		301 이상	360	
영 업 용		1~30	95	
		31~50	145	
		51~100	270	
		101~500	450	
		501 이상	480	
욕탕용	1종	1~500	100	
		501~700	105	
		701~1000	110	
		1001 이상	115	
	2종	1~200	220	
		201~300	285	
		301~500	495	
		501 이상	550	
산 업 용		m <sup>3</sup> 당	115	

주) 1.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

[별표2]

###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

업 종	구 분 내 용
가 정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</li> <li>•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</li> <li>•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</li> <li>•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</li> </ul>
업 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설소화전</li> <li>• 시립위탁시설(청소년회관, 체육시설에 한함)</li> <li>• 사회구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하는 시설</li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)</li> <li>• 학교</li> <li>• 정당</li> <li>• 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교회, 사찰,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</li> <li>• 병영</li> <li>• 신문사, 방송국</li> <li>• 한국과학기술단지 연구기관</li> <li>• 급수탑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, 공설소화전</li> <li>•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</li> <li>•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</li> </ul>

업 종	구 분 내 용
영 업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접객업, 공연장, 숙박업</li> <li>• 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</li> <li>•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포함)</li> <li>• 차량판매·정비업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,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</li> <li>• 음식점</li> <li>• 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</li> <li>• 사진현상소</li> <li>•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</li> <li>•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</li> <li>• 발전소</li> <li>• 이발소(미장원 포함)</li> <li>• 병원</li> <li>•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</li> <li>• 화훼, 식목업</li> <li>•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), 오피스텔</li> <li>• 도살장, 정육업</li> <li>• 양조업, 제빵업, 제분업(방앗간 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 제조업, 의약품, 화장품, 화장품제조업,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, 합성수지제조업, 페인트류제조업, 가구류제조업(자재가공포함), 연료제조(고압가스제조 포함)</li> <li>•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가공업, 식료품제조가공업, 피혁제조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</li> <li>•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</li> <li>• 제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</li> <li>•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 초자제품 포함)</li> </ul>

업종	구분내용	
영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,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 에 대한 급수 제외)</li> <li>•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•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요율 적용)</li> <li>•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</li> </ul>	
욕탕용	1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탕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/ul>
	2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•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</li> <li>• 가족탕업, 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•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
산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li> <li>• 두채 재배업소</li> </ul>	

- 주) 1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
2.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
3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

[별표5]

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

설치자	법인명			
	성명(대표자)			주민등록번호
시공자	주소			
	성명(대표자)			전화번호
배수설비현황	설치목적	생활오수, 산업폐수, 축산폐수, 기타( )배제		
	설치위치	시 구 동 번지( 동 반)		
관경	관종	PVC관, PE관, 흙관, VR관, PC관, 강관, 주철관, 기타		
	관경	Ø mm	연장 m	접속방법 (하수관, 맨홀, 타배수설비, 기타)에 접속
배출수량	m <sup>3</sup> /일	※ 환경부 고시 제97-85(97. 9. 18)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		

검사항목	1차검사	보완사항	2차검사	비고
	검사일자 ( . . )		검사일자 ( . . )	
1.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 시공여부 (누수, 지하수침투여부, 공공하수도·타배수설비훼손여부, 훼손시 적정 복구여부)				
2. 배수설비 경사도(100분의 1 이상)				
3.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				
4. 배수설비 재질(내구성, 내부식성)				
5. 오수, 우수 분리배관 여부				
6. 공공하수도,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				
7.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				
검사자	성명 (서명또는인)	성명 (서명또는인)		

※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○, ×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

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부천시장 귀하

구비서류 :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·중·후의 사진 각 1식	수수료
---	----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(신설)</p>	<p>제5조의2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·중·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배수설비의 준공검사절차 규정</p>
<p>제17조(오수배출량의 인정) ①~②(생략)</p> <p>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17조(오수배출량의 인정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오수배출량이 다를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기를 설치하고 동일사업장의 모든 오·폐수 등이 동기기를 통하여 배출될 경우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	<p>신고량과 배출량이 다를 경우 신고량을 조정하고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</p>



현행			개정안			비고
(별표1호 서식) 하수도사용요금표			(별표1호 서식) 하수도사용요금표			
구분 업종	초과사용요금		구분 업종	사용요금		
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/월)	m <sup>3</sup> 당 단가 (원)	
일반용	0~10	400	가정용	0~10	60	
	10~30	59		11~20	75	
	30~50	87		21~30	80	
	50~100	165		31~40	115	
	101 이상	280		41~50	120	
			51 이상	250		
영 업 용	1 종	1~10	500	업무용	1~20	75
		11~30	65		21~50	105
		31~50	100		51~100	350
		51 이상	280		101~300	355
					301 이상	360
	2 종	1~10	700	영업용	1~30	95
		11~30	70		31~50	145
		31~50	110		51~100	270
		51~100	200		101~500	450
		101~500	330		501 이상	480
501 이상	3500					
육 탕 용	1 종	톤당	77	육 탕 용	1~500	100
		0~200	32000		501~700	105
	2 종	201~300	210		701~1000	110
		301~500	360		1001 이상	115
		501 이상	400			
공공용	톤당	77	2 종	1~200	220	
공중용	톤당	38		201~300	285	
산업용	톤당	88		301~500	495	
일 시 사 용	톤당	165	산업용	m <sup>3</sup> 당	115	

현행		개정안		비고
(별표2호)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		(별표2호)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		
업종	구분내용	업종	구분내용	
일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</li> <li>•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</li> <li>•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</li> <li>• 공용급수전</li> <li>•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</li> </ul>	가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</li> <li>•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</li> <li>•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</li> <li>•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</li> </ul>	
영업용	1종	업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설소화전</li> <li>• 시립위탁시설(청소년회관, 체육시설에 한함)</li> <li>• 사회구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하는 시설</li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포함)</li> <li>• 학교</li> <li>• 정당</li> </ul>	
	2종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접객업</li> <li>• 공연장</li> <li>• 숙박업</li> <li>• 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</li> <li>•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포함)</li> </ul>

현행		개정안		비고	
업종	구분내용	업종	구분내용		
업  용	2 종	업 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차량판매정비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</li> <li>•예식장</li> <li>•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 지도 제외)</li> <li>•병·의원</li> <li>•사진현상소</li> <li>•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</li> <li>•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 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</li> <li>•발전소</li> <li>•이발소(미장원 제외)</li> <li>•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</li> <li>•화훼, 식목업</li> <li>•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한 4층 이상 건물), 오피스텔</li> <li>•도살장, 정육점</li> <li>•양조업, 제방업, 제분업(방앗간 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제조업,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교회, 사찰,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</li> <li>•병영</li> <li>•신문사, 방송국</li> <li>•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</li> <li>•급수법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, 공설소화전</li> <li>•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</li> <li>•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</li> </ul>	
			업 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식품접객업, 공연장, 숙박업</li> <li>•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</li> <li>•백화점, 도매센타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포함)</li> <li>•차량판매·정비업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,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</li> <li>•예식장</li> </ul>	

현 행		개 정 안		비고
업 종	구 분 내 용	업 종	구 분 내 용	
업 종 용	2 종	영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 지도 제외)</li> <li>• 사진현상소</li> <li>•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</li> <li>•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</li> <li>• 발전소</li> <li>• 이발소(미장원 포함)</li> <li>• 병원</li> <li>•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</li> <li>• 화훼, 식목업</li> <li>• 빌딩(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), 오피스텔</li> <li>• 도살장, 정육업</li> <li>• 양조업, 제빵업, 제분업(방앗간 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 제조업, 의약품, 화공약품, 화장품제조업,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, 합성수지제조업, 페인트류제조업, 가구류제조업(자재가공포함), 연료제조(고압가스제조 포함)</li> </ul>	
	1 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탕업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태 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/ul>	

현행		개정안		비고
업종	구분내용	업종	구분내용	
욕탕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 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•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</li> <li>• 가족탕업, 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•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	영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, 식료품제조가공업, 피혁제조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</li> <li>•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</li> <li>• 제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</li> <li>•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 초차제품 포함)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사업 포함)</li> <li>• 학교</li> <li>• 정당</li> <li>• 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교회, 사찰,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</li> <li>• 병영</li> <li>• 신문사, 방송국</li> <li>•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</li> <li>• 급수탑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, 공설소화전</li> <li>•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,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된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)</li> <li>•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•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 요율적용)</li> <li>•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 급수</li> </ul>	
공공용		영업용	1종	• 공동탕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
			2종	•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

현행		개정안		비고
업종	구분내용	업종	구분내용	
공중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구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·운영하는 시설</li> </ul>	육 탕 용  2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</li> <li>• 가족탕업, 한중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 허가기준)</li> <li>•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	
산업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li> <li>• 두채 재배업소</li> </ul>		산업용	
주)1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. 2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		주)1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. 2.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 1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		